

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18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7.

발 의 자 : 조경태 · 김태호 · 고동진
안철수 · 한지아 · 신성범
박성훈 · 엄태영 · 박정하
정성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생산업자 · 판매업자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홈쇼핑,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판매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소비자는 판매를 중개하는 홈쇼핑이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및 처분 사실을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홈쇼핑이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처분 관련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4항제6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제3항제4호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원산지 표시 등의 공포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) ① ~ ③ (생 략)	제9조(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) ① ~ ③ (현행 과 같음)
④ 제2항의 공표는 다음 각 호 의 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.	④ ----- ---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6의2. 제3항제4호에 따른 방송</u> <u>채널사용사업자 또는 통신관</u> <u>매중개업자</u>
7. (생 략)	7. (현행과 같음)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